

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62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4. 10. 10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2조
- 「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0조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관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·사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“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”를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항

- 센터의 운영 및 관리
-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토 및 실태조사
-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등

3. 민간위탁 기간

○ 2025. 5. ~ 2026. 12.(1년 8개월)
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후 개소 예정

4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

5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소요예산 : 100백만원[2025년 본예산(안), 도비30% / 시비70%]

(단위: 천원)

구분	산출내역	금액
합 계		100,000
인건비	급여(기술요원 2인), 제수당, 사회보험부담금	69,542
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, 여비, 차량비, 공공요금 등	23,458
재산조성비	사무가구, 전산용품 등	7,000

6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결 과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0조 제4항에 의거 업무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·고령자 등 보행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비영리법인 기관·단체에 위탁을 통해 공공 운영 대비 예산 절감 가능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토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분기별 실적보고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사업 개선 및 발전 도모에 용이

구 분	검 토 결 과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, 점검을 통하여 본 위탁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의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

7. 향후 추진계획

- 2025. 2. : 공개모집
- 2025. 3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
- 2025. 4. : 위·수탁 협약 체결
- 2025. 5. : 기술지원센터 개소

8. 참고 사항

- 관계 법령 각 1부.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(약칭: 교통약자법)

[시행 2024. 9. 15.] [법률 제20335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

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2.>

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22.>

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12. 22.>

[전문개정 2012. 6. 1.]

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0. 2.] [법률 제2285호, 2024. 10. 2., 일부개정]

제20조(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
2. 이동편의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기술지원
3.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
4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· 지도
5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
6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사전·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·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
2.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
3. 남양주도시공사

⑤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·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10.2.]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0. 2.] [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277호, 2024. 10. 2., 일부개정]

- 제6조 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4.10.2.>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2.15.>
1. 위탁기간의 변경
 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 3.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 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 3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<신설 2024.10.2.>
- 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위탁사무명
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3. 위탁사무 내용
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 5. 위탁기간
 6. 수탁기관 선정방식
 7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 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 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 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